##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66 발의연월일: 2023. 1. 9.

발 의 자:양정숙·강민정·민형배

이용선 · 김영배 · 양경숙

장경태 · 위성곤 · 이상헌

윤준병 • 기동민 • 김정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은행에 대한 경영공시 규정을 두어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의 제목 "(경영공시)"를 "(경영공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은행은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율과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율 및 그 차이(이하 이 조에서 "예대금리차"라 한다)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제7호의4 중 "제43조의3"을 "제43조의3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3 <u>(경영공시)</u> (생 략)	제43조의3 <u>(경영공시 등)</u>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은행은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율과 각종 대출 등 여신업
	무에 대한 이자율 및 그 차이
	(이하 이 조에서 "예대금리차"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
	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③ 은행은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9조( <mark>과태료</mark> )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7의4. <u>제43조의3</u> 을 위반하여 공	7의4. <u>제43조의3제1항</u>
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	
용을 공시한 은행	
7의5. ~ 11. (생 략)	7의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